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41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2.

발 의 자 : 김한규 · 문대림 · 임미애
복기왕 · 김태년 · 고민정
박홍배 · 송기현 · 김원이
진성준 · 문정복 · 부승찬
진선미 · 박정현 · 박상혁
장철민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부 조직 개편 이전의 체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, 현재의 정부 조직 개편 사항(기획재정부→재정경제부·기획예산처)을 반영하여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무총리 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,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7조).

법률 제 호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30명”을 “3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25명”을
“30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 설치 등) ① (생 략)	제17조(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 회의 설치 등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30명</u>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.	② ----- ----- <u>35명</u> ----- -----.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<u>25명</u>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.	⑤ ----- ----- <u>30명</u> ----- -----.
⑥ · ⑦ (생 략)	⑥ · ⑦ (현행과 같음)